

경영유의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신한투자증권(주)

2. 조치일 : 2026. 5. 13.

3. 조치내용

제재대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 3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회계원장 수정 절차 강화

신한투자증권(주)(이하 '회사')는 일별 마감 후에도 재무회계부가 원장 마감을 해제하면 책임자 확인 없이 현업부서 담당자 단독으로 과거 회계원장을 수정할 수 있으며, 이때 수정 내용이 상품원장 등 다른 원장에 즉시 반영되지 않아 동 내용을 후선부서가 확인할 수 없는 등 현업부서의 부당한 원장 수정*에 대한 통제절차가 미흡한 사실이 있다.

* 예) 2024.9월 및 10월 A부서의 허위 Equity Swap 원장 소급 적용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회계원장 수정 시 현업부서 책임자 및 후선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수정내역을 후선부서에서 즉시 점검·확인할 수 있도록 원장 점검 절차 등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2) 장외파생상품의 실재성 확인 절차 강화

회사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확인서(Confirmation Letter)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결제업무부가 해당거래 실재성을 현업부서 담당자로부터 확인하고 있으나, A부서가 2024.9.5.에 등록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허위성을 2024.10.10.에서야 인식하는 등 실재성 확인 절차가 실효성 있게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결제부서가 거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 구체적 기간과 횟수를 설정하고, 거래확인서 미비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에 직접 확인하는 등 장외파생상품의 실재성 확인 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3) 관리회계손익 검증절차 강화

회사는 관리회계시스템을 통해 성과급 산정 등을 위한 부서별 손익자료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별도 손익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고 있는데, 검사대상기간(2022.1.1~2025.5.30.) 중 A부서가 왜곡·조작하여 제출한 손익자료를 검증 없이 수용해 동 부서에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재무회계손익과의 대사를 통하여 관리회계손익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현업부서의 손익조정 요청 시 조정 근거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